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6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정성호·천하람·박성준

소병훈 • 이병진 • 복기왕

김문수 · 박희승 · 주철현

안규백 • 이연희 • 윤후덕

최기상 · 채현일 · 임광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 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 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으 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81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794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해당 회계연도"를 "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" 로, "지방의회에"를 "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"로 한다.

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1조의2(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 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지출보고 서를 취합하여 지방세감면 · 비과세 ·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·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· 세목별로 분 석한 보고서(이하 "지방세지출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지방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(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) 제5조(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 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 -----<u>해</u>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<u>연도</u>-----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(이하 "지방세지출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----야 하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81조의2(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5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감면 • 비과세 • 소득공제 ·세액공제·우대세율적용 또 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 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· 세목별 로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지방

세지출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지 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 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